

이사회 운영규정

(2023년 10월 27일 개정)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5조 (의 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6.3.18 개정)
-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16.3.18 개정)
- ③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로 한다. (2016.3.18 신설)

2023년 10월 27일 개정

제5조의 2 (선임사외이사) (2023.10.27 신설)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사외이사들간의 협의를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정할 수 있다.
 - ②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된 사외이사의 이사 임기로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2.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사외이사간의 소통 지원
 3.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제6조 < 삭제 > 2000. 5.10 폐지

제7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012.8.17 개정)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 직무대행의 순위에 따른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1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000.5.10 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000.5.10 개정)

제11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2012.8.17 개정, 2022.7.29 개정)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부 의 사 항

제12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주총의장의 결정
 4.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022.7.29 신설)
 5.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2022.7.29 신설)
 6.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022.7.29 신설)
 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022.7.29 신설)
 8. 이사의 보수한도 (2022.7.29 신설)
 9. 액면미달 주식의 발행 (2022.7.29 신설)
 10. 정관의 변경 (2022.7.29 신설)
 11. 자본의 감소 (2022.7.29 신설)
 12. 회사의 해산, 계속, 합병 (2022.7.29 신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022.7.29 신설)
 14. 현금 · 주식 배당의 결정 (2022.7.29 신설)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022.7.29 개정)

②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경영계획,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의 승인 (2018.4.9 개정, 2022.7.29 개정)
2.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의 개폐 (2022.7.29 신설)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기본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관한 사항 (2022.7.29 개정)
5. 내부거래 등의 승인 (2022.7.29 신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2.7.29 신설)
 - 2)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상법상 특수관계인 포함)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7.29 신설)
 - 3) 1), 2) 사항 이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2022.7.29 개정)
6. 건별 1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 대외 후원금 (2017.3.24 신설)
7.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022.7.29 신설)
8. 자산재평가 (2022.7.29 신설)
9.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투자·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2022.7.29 신설)
10.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2022.7.29 신설)
11.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2022.7.29 신설)
12.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회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Bond는 제외함) (2022.7.29 신설)
13.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50% 이상의 차입계약 체결 (2022.7.29 신설)
14.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가지급, 대여, 증여의 결정 (2022.7.29 신설)
15. 주식등의 액면분할 및 병합 (2022.7.29 신설)
16.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등의 상장 (2022.7.29 신설)

④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2000.5.10 개정)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 및 해촉
3. 고문 및 대우임원의 선임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 이사 경업, 동업타사의 임원 겸임의 승인 (2022.7.29 개정)
6. 이사회 의장의 결정

7.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000.5.10 신설)
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000.5.10 신설)
9.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의 개폐 (2022.7.29 조문 이동)

⑤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금융기관 또는 외부기관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2022.7.29 개정)

제 5 장 위 임

제13조 (위 임)

-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000.5.10 개정)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 ③ ①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다음사항에 대한 결정을 경영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2018. 4. 9 신설)
가. 경영계획의 승인
나. 고문 및 대우임원의 선임

제13조 2 (위원회) (2000. 5.10 신설)

-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경영위원회 (2016. 3.18 개정)
나. 감사위원회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라.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④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전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0조(소집절차), 제11조(결의방법), 제16조(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경영위원회) (2000. 5.10 개정, 2016. 3. 18 개정)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6. 3. 18 개정)
-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16. 3. 18 개정)
- ③ 이사회는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회 부의사항 및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022. 7. 29 신설)

제14조2 (감사위원회) (2000. 5.10 신설)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00. 5.10 신설)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기 타 사 항

제15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6조 (의사록) (2000. 5. 10 개정)

-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17조 (사후승인) (2000. 5.10 개정)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7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지침은 본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0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